

배 기 량	씨 씨 당 세 액	
	영 업 용	비 영 업 용
1,000씨씨 이하	10원	110원
2,000씨씨 이하	10원	140원
3,000씨씨 이하	12원	165원
3,000씨씨 초과	15원	200원

제3조(사무처리의 위임)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물 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 여 처리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 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.

제34조·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 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 관 세입·세출에 이입한다.

'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

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(엘렘복지타운, 부녀복지관) 부지매입 및 한 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신축과 서울시립대의 외

국객원교수 숙소인 APT 매입등 재산취득, 용도폐지된 토지 및 건물의 재산매각,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투자 기관, 공공 도서관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'94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동의한다.

○'94시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

- 취 득 5건 { 토지 11필지 9,373.05㎡
 { 건물 9동 2,307.27㎡
- 처 분 25건 { 토지 25필지 7,654.4㎡
 { 건물 4동 638.92㎡
- 무상사용 5건 { 토지 149필지 762,233㎡
 { 건물 3동 9,215.97㎡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